

해상안전공학(3)

해양경찰과 서동일

선박 구명 설비 규정

낚시 어선



유선 및 도선



수상레저기구



선박 구명 설비 규정

낚시 어선

낚시어선업자 안전의무



-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토록 해야함(미착용시 승선 거부)

- 승객에게 안내할 사항

안전한 승하선 방법, 인명구조장비·소화설비 보관장소 및 사용법, 비상신호, 비상시 집합장소 위치와 피난요령, 인명구조 관련기관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 (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3,4항)

낚시 어선

낚시어선에 갖추어야 하는 구명설비



구명조끼	최대승선인원 120% 이상 (20%이상 어린이용)
구명부환	최대승선인원 30% 이상
구 명 줄	1개 이상(지름 10mm이상, 길이 30m이상)
구명뗏목	최대승선인원 100%이상 수용 가능 (최대승선인원 13인이상 낚시어선)

(시행령 제16조1항3호-별표4)

유선 및 도선

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



유·도선 사업자는 사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 구조 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.

(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2조)

유·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기준

[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기준]

- 승선정원 120%이상의 구명조끼(승선정원 20%의 소아용)
- 승선정원 30%이상의 구명부환
(정원 50% 탑승가능한 구명정, 구명뗏목, 구명부기 갖추면 15%이상)
- 지름 10mm이상, 길이 30m이상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(throw bag) 1개 이상
(승선정원 13인 이상인 유선) (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7조1항)

[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기준]

- 승선정원 120%이상의 구명조끼(승선정원 20%의 소아용)
- 승선정원 30%이상의 구명부환(정원 50% 탑승 구명정, 구명뗏목, 구명부기 갖추면 15%이상)
- 지름 10mm이상, 길이 30m이상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 1개 이상
(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8조1항)

구명부기



드로우 백(throw bag)



유선 및 도선

인명구조용 장비의 이용

유선, 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는 승객, 선원, 인명구조요원, 그 밖의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함 (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7조 4항)

유선·도선 사업자의 금지행위

유선·도선 사업자, 선원, 종사자의 금지행위

- 유선 및 도선 운항 중 구명조끼, 구명부환,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
(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5항11호)

유선 및 도선

인명구조 요원

-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(수상구조사 포함)
 - 해군·해양경찰 복무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
 -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 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
 - 그밖에 위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사람
- (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0조)

참조!

인명구조 요원 자격

인명구조요원

해양경찰청장 지정 수상레저 관련 기관, 단체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
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(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)

→ 교육 이수(인명구조법 등 40시간) + 평가 합격

수상구조사

해양경찰청장 지정 관련 단체, 기관(교육기관)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
시험에 합격해야 한다(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)

→ 교육 이수(이론, 실습 등 64시간) + 시험 합격(해양경찰청장 실시)

수상레저기구

안전장비의 착용



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

- 구명조끼 착용[(구명자켓·구명슈트 포함, 서프보드는 보드 리쉬(board leash) 착용]
 - 구명조끼 + 안전모 착용(워터슬레드 이용, 래프팅 할 때)
- (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)

보드 리쉬

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

인명구조용 장비 등록 기준

⇒ 수상레저사업

구명조끼

- 탑승정원의 110%이상 (탑승정원 10%는 소아용)
- 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함

비상구조선

- 레저기구 30대 이하(1대)/ 31대 이상(2대)/ 51대 이상(매 50대 초과시 1대씩 더한 수)
- 비상구조선 표시 부착(주황색 깃발)
- 탑승정원 3명 이상, 속도 시속 20노트 이상
(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5항 별표10)

비상구조선 사용

사업장 구역의 순시,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,
영업 중에는 항상 사용 할 수 있어야 함

목적 외 사용금지



인명구조용 장비 등록 기준

구명튜브

- 탑승정원 4명 이상 기구에 탑승정원 30% 이상의 구명튜브
-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드로우백으로 갈음
드로우백의 구명줄(지름 6mm 이상, 길이 20m 이상)

구명줄

- 탑승정원 13인 이상 기구에 구명줄 1개 이상(지름 10mm 이상, 길이 30m 이상)

예비용 노·상앗대

- 노·상앗대가 있는 기구 수의 10% 이상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 구비

인명구조 요원

- 비상구조선 수 만큼의 인명구조요원
(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5항 별표10)

구명정 운용 하기

구명정 기관의 요건

⇒ 교재 참조

구조정 추진에 대한 요건

- 6노트 속력/4시간 속도 유지
- 인명구조, 구명뗏목 통제
 - 구명뗏목 만재상태 최소 2노트로 예인
- 내부 기관, 선외 발동기 갖추어야 함



기관의 정비에 대한 요건

1. 작동 준비 ⇨ 구명설비가 즉시 사용가능한 상태

2. 정비 ⇨ 선내 정비 지침서 구비, 정비가 적절히 수행

3. 폴의 정비 ⇨ 2년 6월 내 바꿈, 5년내 신환 / 4년이내 신환

4. 예비품과 수리용 의장품 ⇨ 마모, 소모에 대비 구비

기관의 정비에 대한 요건

5. 주간검사 ⇨ 육안검사/ 시운전/ 비상 경보장치 작동 확인

6. 월간검사 ⇨ 점검표 사용 매월 검사, 항해일지에 기록

7. 일상적인 정비 ⇨ 밸브계통 부식 확인, 윤활유 주유 등